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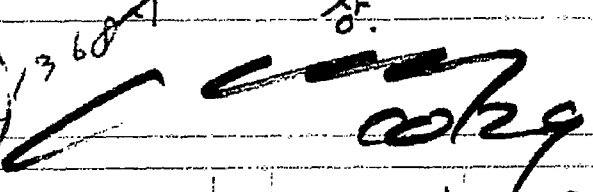

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27145- (50.) (전화번호 75-6593)	전결유형	조결사항
처리기간		장.	
시행일자	77. 10.		
보존년한			
보조기관	제2부서장 전결	협	법무담당관 심사팀 (20여명 상수)
기안책임자	정용훈 (유수지) 77.10.20 (유수지)	조	
경유		발	
수신	각 안 참조.	신	
참조		통	
차 례	도시계획시설 (유수지)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	계	

제 1안 - 내부결재.

1. 당시 관내 도립제2유수지 및 선정유수지에 대하여 변경과 같은 사유가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제13조와 건설부령 제14호 (77. 3. 16) 의 권한 위임 규정 에 따라 별안과 같이 시설 일부 변경 및 지적승인 요청 하여 본진중 도립 제2 유수지에 대하여는 구로공단 주변정비 계획의 일환인 가로계획선 (40m) 에 일부 저축되므로 저축부지를 제외하여 지적승인 요청 합니다.

2. 본전은 당시 제 16차 (77. 10. 13) 도시계획 위원회 에서 협의 가결된 사항 입니다.

가. 시설명 및 면적

- 도립제2유수지 (기정 24710 M² 변경 23807 M²)
- 선정 유수지 (기정 42000 M² 변경 47100 M²)

나. 신청인 : 하수공관 (하수시설과장)

첨 부 : 변경 사유서 부
위원회 심의안 및 회의록 각 부
광역시도면 각 부

제1안	제2안	제3안
당	상	법무담당
주	민	

제2안 고시안

서울특별시 의 제 호
도시계획시설(유수지) 일부 변경 및 지적 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유수지)을 다음과 같이
일부 변경 결정하고 지적 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2조
및 동법 제 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1호(77. 3. 16)의 권한
위임 규정 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.

2. 광계 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광항구청
시인 봉사실 및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
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7. 10.

서울특별시 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유수지) 일부 변경 및 지적 승인

구 분	시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기 정 변 경	도림제 유수지	영등포구 신도림동	24700 ^m ²	면적증소
	"	"	23807 ^m ²	
가정(제지) 변경(신설)	신정 유수지	영등포구 신정동	82000 ^m ²	위치변경 및면적증소
	"	강서구 무등리2	67100 ^m ²	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 끝

제 3 안

수 신 : 건설부 장관

발 신 : 시장

제 부 : 동 건

16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유수지) 일부 변경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유수지) 일부 변경 및 지적 승인을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 표시와 같이 고시 하였기 보고 합니다

첨 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

제 4 안

수 신 : 문화 홍보관

발 신 : ^{국외} ~~국외~~ ^{국외} ~~국외~~

제 목 : 시보 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시보 게재 의뢰 하오니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시보 게재 구분 : 고시

나. 시보 게재 전명 : 도시계획시설 (유수지) 일부 변경 및 지적 승인

다. 법적 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

첨 부 : 고시문 사본 1부

제 5 안

수 신 : 수신처 창조

발 신 : 시강

제 목 : 동건

키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(유수지) 일부 변경 및 지적 승인이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 표시와 같이 고시 하였기 통보하오니 관계 토사를 정리하는 등 시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러 건축대지 증명 발급 등 제반 업무 처리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

첨 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

수 신 처 : 영등포 관서 (주청장)

제 6 안

수 신 : 하수시설 과장

발 신 : 과장

제 목 : 동건

1. 하사 410.-6936.(72.10.11) 외. 발현입니다.

2 위 내후로 요청하신 도립 제2유수지 및 시립
유수지 일부 변경이 관하여 별첨과 같이 코시 되었거
는
증보합니다.

첨 부 : 고사문 사본 및 관계 도면 각 1부

